

이사회 내규

제 1조 : 본 내규는 온타리오 한인 실업인 협회의 이사회 운영 내규라 칭한다.

제 2조 : 본 내규는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과 이사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 실시한다.

제 3조 : 분과위원회

제 1항 : 구 성

1. 회칙 분과 위원회
2. 상벌 분과 위원회
3. 선거관리위원회

제 2항 : 업 무

1. 회칙 분과 위원회 : 모든 규정의 미비점 심의, 검토, 개정
2. 상벌 분과 위원회 : 포상 및 징계 사항
3. 선거 관리 위원회 : 제반 선거 업무 관장

제 3항 : 분과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을 두어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4조 : 회 의

제 1항 : 정기 이사회는 일년에 4회 이상 소집,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2항 : 이사장 선출을 위한 정기 이사회는 예.결산 보고를 위한 정기 총회를 마친 이후 1개월이내에 소집, 개최해야만 한다.

제 5조 : 정.부 이사장 선출 및 임기

제 1항 : 정.부 이사장은 예.결산 보고를 위한 정기 이사회 이후 개최되는 첫 정기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이사장은 이사장단을 구성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
제 2항 : 선거는 전년도 선거관리 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.

제 3항 : 이사장 선출은 무제한 후보 추천하며 무기명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로 정한다.

제 4항 : 전년도 이사장은 차기 정기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무를

수행한다.

제 6조 : 선거관리 위원 선출은 복수 후보로 추천하며 무기명 비밀 투표로 최다 득표자 순으로 정한다.

제 7조 : 선거관리 위원회는 본 협회장 선거의 해당연도에는 최종 이사회 이전에 선거 세칙을 기안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선거를 실시한다.

제 8조 : 상.별

제 1항 : 본회 이사회의 이사는 회계연도 내에 2회를 초과해 이사회 회의에 적절한 사유통보없이 무단 불참할 시, 당해 회계연도에 한하여 자동으로 이사직 위를 상실한다.

제 2항 : 본회 이사는 사정으로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할 때는 연 1회에 한하여 본인 서명의 출석 의뢰서를 제출함으로써 출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당해 회의의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제 3항 :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의 결원이 발생해 이사의 충원을 필요로 할 때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.(단 5명을 초과할 수 없다). 이사보선은 회장단과 이사장단에 위임하며, 당연직 이사의 결원이 된 이사의 충원은 그 직책을 승계한 자가 자동으로 이사로 선정된다.

제 9조 : 의 전

협회는 다음 사항에 따라 협회장 및 회원장으로 한다.

제 1항 : 협회장

1. 협회 업무 수행중 순직한 회원 및 임직원
2. 협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

제 2항 : 회원장

협회 정회원으로 사업 수행 중 강도 및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자

제 3항 : 이상의 사항은 상.별 분과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.

제 10조 : 신.구 회장 업무, 인수인계에 따른 조치

신회장이 선출되는 당일 신 회계연도부터 신.구 회장 업무 인수인계시까지의 협회 제반 업무 결재는 이사장의 공동 서명으로 처리한다. 단, 인수인계는 당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한다.

제 11조 : 협동조합 운영 이사 파견

제 1 항 : 파견 이사는 주주 총회에서 인준된 회장단 2인, 이사장단 2인으로 구성한다.

제 2 항 : 협동조합 운영 이사장단은 정기 이사회 및 분과 위원장 회의에 출석하여 업무 보고를 한다.

제 3항 : 협회의 파견이사의 임기는 조합 주주총회에서 인준 받은날로부터 차기 주주총회까지로 한다.

제 12조 : ‘협회의 주요 정책 사업’ 범위 및 의사 결정

제 1항 : 협회의 주요 정책 사업범위는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의사정족수 3분의 2 이상,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항 : 협회의 주요 정책 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리베이트와 볼륨 인센티브는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본부 협회 경비를 공제한 금액 전액을 회원들에게 지급한다. 단, OKBA 프로그램스토어 사업 참여 회원이 동 사업과 관련해 창출한 리베이트와 볼륨인센티브의 15%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속 지구협회에 지급한다.

제 3항 : 협회의 주요 정책 사업중 최소 한가지 이상의 사업에 참가하는 회원으로서 추가로 결정된 주요 정책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사유가 해당 사업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회원 자격이 유지된다.

제 4항 : 모든 주요 정책 사업은 집행부에서 정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업이어야 한다.

제 13조 : 이사들의 공직 업무 수행중 발생된 소송에 대해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소송 비용을 협회에서 부담한다.

제 14조 : 본 내규의 규정이 본회 정관에 위배될 때는 정관이 우선한다.

제 15조 : 본 내규는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
제 16조 : 본 내규는 통과된 날로부터 실시한다.

부 칙

제 1항 : 회장 업무 활동비의 영수증 및 상세명세 첨부는 90% 이상으로 한다.

1989년 2월16일 제정

1998년 2월10일 정기 이사회 시 개정

1999년 6월17일 2차 임시 이사회 시 개정

1999년 10월 8일 정기 이사회 시 개정

2001년 3월27일 1차 임시 이사회 시 개정

2004년 7월22일 2차 임시 이사회 시 개정

2005년 11월17일 정기 이사회 시 개정

2006년 10월 3일 정기 이사회 시 개정

2008년 9월 26일 정기 이사회 시 개정

2013년 3월 7일 임시 이사회 시 개정

2014년 10월 6일 정기 이사회 시 개정

2015년 4월 23일 3차 정기 이사회 시 개정

2019년 10월 16일 정기총회 정관 개정에 의거한 개정

2022년 12월 16일 정기총회 정관 개정에 의거한 개정